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7일,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양부남의원)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나아정)

(1)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확대 및 안전성평가 근거 마련

첫째, 안전성평가의 정의(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도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안전성평가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평가의 정의에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활동을 포함하는 안이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둘째, 안전점검 실시(안 제15조제1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어린이놀이기구의 결함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성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공백 없이 적절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안 제15조의3)와 관련하여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설치자와 관리주체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도 ①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② 관리주체가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안전관리 방안이라고 보임.

넷째, 조문 체계와 관련하여 두 개정안 모두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신고, 안전성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설치자와 관리주체가 각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① 설치자의 안전성평가 실시 규정은 현행법의 설치검사에 대비하여 설치검사 등과 관련된 조문(안 제12조)에, ② 관리주체의 안전성평가 실시 규정은 현행법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조문(안 제15조의3)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2) 사고보고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신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해당 사고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의 사고보고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제각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고발생 후에도 지연 통보하는 사례가 있고, 지연 통보한 경우 사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과태료 등 관련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2], 개정안과 같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사고보고를 하는 방법과 절차, 보고기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 사고보고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신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사고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연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과태료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 시설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설치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3],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어, 과태료와 같은 제재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를 통한 안전관리 책임 소재 확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할 때,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과태료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둘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실시·기록 보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점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검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교하여,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성평가 관련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정도는 균형적인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행정지도만으로는 안전관리 이행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